

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* 계약 당사자

-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,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.

* 계약 기간

-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.

* 계약 목적

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,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.

*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

- 재가급여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.
-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 (본인부담금)을 말일에 정산하여 수급자 (또는 보호자)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3일까지 청구서와 영수증을 우편발송 한다.
- 청구 된 이용료는 당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현금납부, 계좌이체등으로 할 수 있다.
- 이용료 납입확인 영수증을 우편 발송하고 지연시 문자 및 전화로 독촉을 통보한다.
- 본인부담률은 일반대상자가 15%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
- 감경대상자 40%(9%), 60%(6%), 의료수급권자 60%(6%), 기초생활수급자는 0%로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]에 따른 것이며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. (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).
-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.

◆ 월 이용료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(시행 : 2025. 01 .01) ◆

2025년 장기요양 급여 표준 수가표

◆방문요양

(단위 : 원)

구분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금액	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
본인 부담금	일반 15%	345,960	312,510	222,855	205,590	176,550
	감경 9%	207,576	187,506	133,713	123,354	105,930
	감경 6%	138,384	125,004	89,142	82,236	70,620
	기초수급 0%	0	0	0	0	0

◆방문요양 1회당 수가표

(단위 : 원)

서비스시간	금액	본인부담금			
		일반 15%	감경 9%	감경 6%	기초수급 0%
방문당 30분 이상	16,940	2,541	1,524	1,016	0
방문당 60분 이상	24,580	3,687	2,212	1,474	0
방문당 90분 이상	33,120	4,968	2,980	1,987	0
방문당 120분 이상	42,160	6,324	3,794	2,529	0
방문당 150분 이상	49,160	7,374	4,424	2,949	0
방문당 180분 이상	55,350	8,302	4,981	3,321	0
방문당 210분 이상	61,670	9,250	5,650	3,700	0
방문당 240분 이상	68,030	10,204	6,122	4,081	0

단) 평일 오후 06시 이후 오후 10시 이전 - 야간은 표준수가의 20%를 가산

평일 오후 10시 이후 익일 오전 06시 이전 - 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%를 가산한다.

◆ 방문목욕 1회 (방문당) 수가표

(단위 : 원)

서비스시간	금액	본인부담금			
		일반 15%	감경 9%	감경 6%	기초수급 0%
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내 목욕)	86,480	12,972	7,783	5,189	0
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내 목욕)	77,970	11,696	7,017	4,678	0
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8,690	7,304	4,382	2,921	0

***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 계약의 해제**

-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,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.

- 신원인수인의 권리

(가)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
(나)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

(다)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

(라)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,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,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- 신원 인수인의 의무

(가)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

(나)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

(다)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.(해외 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)

(라)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*** 계약의 해제 :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.**

(가)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

(나)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

(다)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

(라)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
(마)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,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,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